

감 사 위 원 회

주 의 요 구

제 목 병가관련 업무처리 부적정

관 계 기 관 인재개발원

내 용

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」 제22조(병가)에서는,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.

그러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는, [표]와 같이 최근 2년간('16.~'17.) 소속 직원 000의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하여 진단서를 제출 받지 아니했음에도 승인하였고, 이후 연가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하였으며, 또한 000이 해당 연도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여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았으므로 연가보상비의 반납 등 사후조치도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되었다.

【표】 최근 2년간('16.~'17.) 병가 사용내역(갑)

소속	직급	이름	연도	병가 기간	병가 일수	비고
인재개발원 가과	행정O급	갑	2016	****	4	· 6일 이내 사용분
				****	2	
				****	1	
				****	1	· 6일 초과, 진단서 미제출(총 8일)
				****	2	
				****	1	
				****	1	
				****	1	
				****	1	
			2017	****	1	· 6일 이내 사용분
				****	1	
				****	2	
				****	1	
				****	1	
				****	1	· 6일 초과, 진단서 미제출(총 1일)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【 조치할 사항 】

인재개발원장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제출 받거나,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병가에 대하여는 연가를 공제하는 등 관련업무 처리에 철저 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요구)